
시험진행(방역) 및 부정행위 예방 수칙

1. 시험문제지의 인쇄는 담당교수 입회 하에 시험기간 전 완료하여야 한다.
2.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험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3. 시험감독관은 시험응시자의 좌석을 1m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4. 시험감독관은 시험응시자의 마스크를 착용을 확인하고 출입구 및 창문을 개방 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2023-1학기부터 권고사항으로 변경)
5. 시험감독관은 반드시 시험응시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에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조치해야 한다.
6. 문·답지 수령 및 회수는 감독관이 직접 지정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7. 시험답안지에 반드시 감독관 서명을 필해야 하며, 답안지 상단의 학부(과), 성명, 학번은 반드시 볼펜 등의 유성 잉크펜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8. 부정행위자 적발 시에는 보고서 양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기로 한다.
9. 답안지(서식)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배부하기로 한다.
10. 시험에서 생성형 AI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본교 재학생의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별 처벌기준)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업성적의 공정한 평가와 면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험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유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4.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시험 범위) 각종 시험이라 함은 학기말시험, 중간시험, 기타 학적부에 기재되는 성적에 관계되는 시험을 말한다.

(감독자보고) 감독교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교무처 또는 각 단과대학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처벌 절차) 시험부정행위자의 징계는 제출된 보고서를 당일 교무처에서 취합하여 총장에게 상신한다.

< 근 거 조 항 >

학칙 제51조(시험 부정행위자처리)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당해 과목 당해 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